



의안번호	제10호
------	------

<p>논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제 출 자	논산시장
제출연월일	2019. 2. 13.

논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10호
----------	------

제출연월일 : 2019. 2. 13.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1. 제안이유

- 협의회는 위원구성 수를 기존 50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변경 구성하여 많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실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협의회는 위원구성 수 변경(50명 이내 → 60명 이내)(안 제7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 반영

- 제7조제1항에 위원의 자격 기준 및 결격사유 미흡 재량 규정의 구체성·객관성 부족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하도록 권고
- 수정권고안 : 제7조(구성) 중 또한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제외한다. 라는 내용 반영
- 제7조제2항에 위원의 연임차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조항 수정 권고
-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및 특혜소지 차단으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도록 수정 권고
- 수정권고안 : 제7조(구성)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내용 반영

- (2)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
 - (가) 예고기간 : 2019. 1. 3. ~ 2019. 1. 24.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4) 규제심사 : 규제대상 아님
- (5) 비용추계서: 불임참조
- (6) 충청남도 소관실과: 충청남도 환경정책과 (041-635-4417)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50명 이내 ”를 “60명 이내”로 한다.

제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또한, 금품·향응수수·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제외한다.

제7조제2항 중 “위촉직은 3년으로 하되 연임”을 “위촉직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환 경 과 장 이 한 철
	환 경 관 리 팀 장 김 길 수
	담 당 자 송 수 연 (746-5513)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7조(구성)

협의회는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적인 논산의제21의 실천을 위해 논산시 관련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시민, 기업체 임직원, 환경단체 임원, 환경전문가 등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협의회 회장 및 위원 또는 초빙 전문가 등이 협의회 활동 및 사업을 위하여 출석, 강의, 원고작성 등 활동을 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 기준에 따라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논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35조(실비보상)

나. 추계결과 : 6,000,000원

◎ 2019년 논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수당

- 50,000원 × 60명 × 2회 = 6,000,000원

3. 작성자

환경과장 이 한 철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국 비						0
기 금						0
도 비						0
시 비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세 출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308 자치단체등이전 08교육기관에대한보조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재원 조달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6,000	6,000	6,000	6,000	30,000
	지방세	6,000	6,000	6,000	6,000	30,000
	세외수입					
	공모사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제10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기본원칙과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교육·홍보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제22조(국내외 협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제21과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9조(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국토는 녹색성장의 터전이며 그 결과의 전시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현세대 및 미래세대가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토의 개발 및 보전·관리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2. 국토·도시공간구조와 건축·교통체제를 저탄소 녹색성장 구조로 개편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녹색제품을 자발적·적극적으로 생산하고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3. 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 및 국민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녹색생활이 내재화되고 녹색문화가 사회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4.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정비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제50조(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법」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 목표, 추진전략과 원칙, 기본정책 방향, 주요지표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국제적 합의이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소관 분야의 중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중앙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지방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